경기도「일하는 청년통장」변경사항 안내

「일하는 청년통장」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**입금방법 및 저축기간**을 아래와 같이 **변경하여 운영** 합니다.

♣ 2018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♣

<변경1> 매월 입금액 10만원으로 한정

◆ 입금방법

(기존) 매월 입금금액 제한 없음
(변경) 매월 20일 10만원 씩 자동이체

◆ 유의사항 : 10만원 이외의 금액을 입금할 경우 입금처리 불가
미납액 다음달 추가 입금 불가

<변경2> 미납기간에 따라 저축기간 자동연기

◆ 저축기간

(기존) 저축기간 36개월 한정(미납 시 이자지급액 감소)
☞ 미납 시 약정이자(1.75~2.5%)가 아닌 중도해지 이자율(0.1~1.5%) 적용

(변경) 미납된 월 수 만큼 자동연기(최장 9개월)
☞ 만기(36회 납입) 시 약정이자(1.75~2.5%) 지급

예시) 36개월 납부 시 : 원금(9,792천원) + 이자(377천원) = 10,169천원
24개월 납부 시 : 원금(6,528천원) + 이자(71천원) = 6,599천원